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



I.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유도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용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별표7>**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⑦ 수출실적증명서 등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별표8>

- * 예)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다. '학원 · 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3] 업종구분 방법” 준용
-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닐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 용자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용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기타 :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II.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1	<p>세금 체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확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체납 여부확인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상 체납사실이 없거나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지원가능하나, 체납처분유예의 경우에는 대출제한 </div>
2	<p>신용정보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 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단, 공공정보 중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등록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3	<p>연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1. 연체대출금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3. 2020.2.13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연체가 발생한 경우
4	<p>휴·폐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p>자가사업장 권리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신청 서류

○ 공통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공통 (정책자금)	◎대출신청 작성서류	- [작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코로나19 소액대출) <별표1> <개인기업, 법인>	1부
		- [작성]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2>	각1부
		- [작성] 소상공인 정책자금(용자) 윤리준수 약속 <별표4>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1부
	①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div>	1부
	②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온/오프라인] * 세무서 *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 : (예) 제조업+도소매업 - 2019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업체 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생략 가능	택1부
③상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div>	택1 (3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공통 (직접대출)	④세금 납부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 세무서 *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주민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 위택스 www.wetax.go.kr 	
⑤주소확인	<p><개인기업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p> <p>-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p> <p>[온/오프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주민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p>1.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p>	1부 (3개월 이내)
⑥사업자 등록증(명) 상의 사업장 확인	- 자가사업장 : 권리침해 사실여부 확인서<별표5>	1부
	<p>- 임차사업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p> <p>*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동거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별표6> 제출</p> <p>◇ 검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⑦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택 1부 (3개월 이내)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2020년도 창업자로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매출액 (증빙서류 징구 생략)		
※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		
[온/오프라인]		
* 세무서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⑧피해사실 확인	<p><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p> <p>- 매출액 10% 이상 감소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2019년 및 2020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수출실적증명서 등 <p>- 매출액 감소 확인서 <별표7></p> <p><'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p> <p>-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별표8></p> <p><'학원 · 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p> <p>- 학원 · 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p> <p>※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류 제출 생략</p>	택 1부
	⑨통장사본	<p>-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p> <p>- 계좌개설확인서</p> <p>- 출금계좌는 아래 7개 은행 중 택1하여 제출</p> <p>-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p>

○ 추가 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① 법인 대출	- 법인 인감	지참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 공동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전부 징구	1부 (3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IV.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센터명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 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303-3131-1002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303-3131-1003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303-3131-100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303-3131-100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303-3131-1006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 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03-3131-1008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 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03-3131-1009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03-3131-1010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 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303-3131-1013	부산 북구 기창로 12, 이수타워 9층 902호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303-3131-10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 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303-3131-101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303-3131-10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 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303-3131-1016	울산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303-3131-10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합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303-3131-1018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303-3131-1019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303-3131-106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 경북 지역 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303-3131-1022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303-3131-1023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303-3131-1026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 의성군,봉화군,예천군, 청송군,영양군

	센터명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303-3131-1024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 성주군,칠곡군,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303-3131-102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303-3131-1027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 청도군
광주 호남 지역 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303-3131-1042	광주 서구 천변차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303-3131-104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303-3131-1044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303-3131-10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303-3131-106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303-3131-104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303-3131-1045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대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303-3131-1049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303-3131-10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303-3131-1050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경기 인천 지역 본부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303-3131-105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303-3131-1052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303-3131-105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03-3131-1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03-3131-1035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 (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03-3131-1036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303-3131-103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하안동 651-1)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03-3131-10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이천시,여주시,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03-3131-1033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 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 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03-3131-103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03-3131-103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03-3131-103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 과천시	

	센터명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03-3131-104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03-3131-1029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03-3131-103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303-3131-10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303-3131-1056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하나은행 대흥동지점)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303-3131-10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303-3131-1059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6, 문경빌딩 3층 구황산빌딩(취업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303-3131-106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303-3131-1061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303-3131-10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303-3131-1062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303-3131-1063	충북 음성군 음성을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303-3131-106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303-3131-106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시

대전
충청
지역
본부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상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 2-1]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붙임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 2-1 참조]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분	내용	
(자금신청시점기준)	2018년 이전 창업 기업	2018.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2019.4.1부터 창업 기업	2019년, 2020년 창업한 기업은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분	내용
산정 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②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확인필요” 기간에 대출신청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1월	2월	3~12월
'17년	'18년	확인필요	'19년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확인필요	'19년
'18년 하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확인필요	'19년
'19년 ~ '20년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 연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예시

예시1) 창업 : '17. 3. 2. / 대출신청 : '19. 1. 2
'17. 7. 1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예시2) 창업 : '17. 8. 2 / 대출신청 : '19. 1. 2
'17. 8. 2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 ⇒ 1년 매출액 환산 계산 방법 : (매출액/해당일수) X 365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법인기업	1~3월	4월	5월~12월
개인사업자	1~5월	6월	7월~12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1~6월	7월	8월~12월
↓			
적합한 회계기간	'18년	확인필요	'19년

·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법인면세사업자	1~3월	4월	5월~12월
개인면세사업자	1월	2월	3월~12월
↓			
적합한 회계기간	'18년	확인필요	'19년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수에 한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분	내용
산정 기준	①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창업일 : 2017년 11월 2일, 제출기간 : 2018년 1월 ~ 12월 직원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7. 11. 20	'19. 2. 10	(직전 사업연도) '18.1월~'18.12월
예시2	'18. 2. 5		(최근 12개월) '18.2월~'19.1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붙임 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3]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내 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 분기말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